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217호

중견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·접수 공고

2021년도 중견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·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2021년 3월 11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○ 사업전환(업종전환·업종추가) 수요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특례를 통해 원활한 신사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

*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17조의 7(사업전환에 관한 특례, 19.7.9 시행)

□ 신청대상

○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비상장 중견기업 중 사업전환 희망기업

* 「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의 중견기업

□ 신청분야

분 야	내 용
업종전환	**기존 업종의 사업을 양도·폐업하고** 신규 업종으로 100% 전환하는 경우
업종추가	기존 사업의 규모를 줄이거나 유지하면서 **새로 추가된 업종의 사업비중이 다음 수준 이상**으로 늘어난 경우 ① 사업 시작 후 3년 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30% 이상이 되거나 ②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총근로자 수의 30%이상이 되는 경우

* 업종요건 : 모든 업종 →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(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“농업, 임업 및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”을 제외한 업종)

* 제조업 ↔ 서비스업 업태전환도 사업전환에 포함

2 지원내용

□ 승인기업 지원내용

○ 중소기업 사업전환법상 특례 규정을 준용하여 간소화된 사업전환 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중견기업 혁신성장 지원

분 야	내 용	비 고
주식교환	자기주식 취득 가능,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기한 단축 등	
합 병	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단축, 주총 소집 통지기간 단축 등	
분할 및 영업양수도	분할 및 분할합병 절차 간소화	
타당성 검증 지원	사업전환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계획 및 이행방안 로드맵 수립, 승인 이후 애로해소 등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① 사업전환계획 신청 전 기업의 기업역량 진단, 전환사업 타당성 분석 등 사업전환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지원 ②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이 애로사항, 이슈 등 시행착오를 줄이고, 사업전환의 안착 및 성공 지원	별도 공고 예정 (4월 중)

3 추진절차

□ 추진절차

신청 · 접수	자격요건 검토	타당성평가	최종진단
중견기업 → 한국중견기업 연합회	➡ 한국중견기업 연합회	➡ 한국중견기업 연합회	➡ 한국중견기업 연합회 → 중견기업

계획승인	계획이행	사후관리
➡ 산업통상자원부	➡ **중견기업**	➡ 한국중견기업연합회

4 접수기간 및 방법

□ **접수기간** : ‘21. 3. 12(금) ~ ‘21. 12. 31(금), 16:00까지

□ **신청서류 :** 별첨 양식 참조(p4 신청서류)

□ **접수방법 :** 이메일(mjpark@fomek.or.kr) 제출

*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오류 등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를 권장하며, 접수 마감일 16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함

□ **접수 및 문의처**

○ 접수처 :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본부 사업팀

○ 전 화 : 02-3275-2217

○ 이메일 : mjpark@fomek.or.kr

5 기타사항

○ 기타 사항은「중견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·접수 지침」을 따름

○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○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

붙임. 2021년 중견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신청・접수 지침(중견기업용)

참고 **신청서류**

□ 신청요건 증빙서류

번호	제출 서류	비고
1	중견기업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지원신청서 (서식1)	*신청·접수 시 제출
2	중견기업 사업전환 계획서 (서식2)	
3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 (서식3)	
4	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명 (신청대상 확인)	*신청·접수 후 타당성평가 시 제출
5	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(상시근로자수 확인)	
6	지방세 납세증명서 (체납여부 확인)	
7	중견기업확인서 (자격요건 확인)	
8	산업재산권, 규격표시 인증, 기타 인증서류 등 사본 (해당기업) * **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프로그램등록** (단, 특허, 실용신안의 경우 별도의 사업계획서상에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별도 제출할 필요 없음) * ISO, KS, JIS, UL, CE 등 **국내외 규격**, Q마크 등 **품질인증** * 신기술(NET), NEP(신제품), GH인증 등 **기술 및 제품인증** * **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성공판정 공문** * PL교육·컨설팅 수료증, 납세자의날 표창장 등	

※ 모든 제출서류는 접수 마감일전까지의 협약 및 인증된 서류만 인정